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중앙아시아국, 동북·중앙아시아국 1개 정책관등, 아세안국 1개 과 및 국제안보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교원 정원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및 주재관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지리적 접근성 및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가이아나 겸임공관을 주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 변경하며,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제15호의3 및 제15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부 내 법령안의 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제27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가이아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의 명칭란 중 “주바레인대한민국대사관”을 “주바레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 한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화국 포트오브스페인

별표 2 중 계란, 국세란 및 농림축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계	340	71	269	33	17	190	29
국세	8		8		1	7	
농림축산	11		11	2		9	

별표 3 중 총계 “940”을 “932”로 하고, 일반직 계 “229”를 “227”로 하며, 4급 이하 “226”을 “224”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03”을 “697”로 하며, 8등급 이하 “646”을 “640”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07”을 “106”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39”를 “38”로 하며, 8등급 이하 “32”를 “3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495”를 “1,489”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495”를 “1,489”로 하며, 8등급 이하 “1,094”를 “1,088”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중 “1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 기관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4급 1명, 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③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5의2. 부 내 법령안의 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u>
<u>15의2. · 15의3. (생략)</u>	<u>15의3. · 15의4. (현행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과 같음)</u>
16. ~ 30. (생략)	16. ~ 30. (현행과 같음)
제27조(국제법률국) ①·② (생략)	제27조(국제법률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5. 부내 법령안의 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u>	<u><삭 제></u>
6. ~ 12. (생략)	6. ~ 12.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제1조(시행일) -----

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나우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2.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셜제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3.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4.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자메리카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

-----.

1. -----

----- 3년-----

2. -----

----- 3년-----

3. -----

----- 3년-----

4. -----

----- 3년-----

5.·6. (생략) 7.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아르메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u>1년</u>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8.·9. (생략) 10.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u>1년</u>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1.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시에라리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u>1년</u>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2.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잠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u>1년</u>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5.·6. (현행과 같음) 7. ----- ----- ----- ----- <u>3년</u>----- ----- ----- 8.·9. (현행과 같음) 10. ----- ----- ----- ----- <u>3년</u>----- ----- ----- 11. ----- ----- ----- ----- <u>3년</u>----- ----- ----- 12. ----- ----- ----- ----- <u>3년</u>-----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외교부 본부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40</u>	<u>932</u>	-8
•	•	•	
•	•	•	
일반직 계	<u>229</u>	<u>227</u>	-2
4급 이하	<u>226</u>	<u>224</u>	-2
•	•	•	
외무공무원 계	<u>703</u>	<u>697</u>	-6
•	•	•	
•	•	•	
8등급 이하	<u>646</u>	<u>640</u>	-6

[별표 4]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7</u>	<u>106</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39</u>	<u>38</u>	-1
·	·	·	
8등급 이하	<u>32</u>	<u>31</u>	-1
·	·	·	
·	·	·	

[별표 5]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95</u>	<u>1,489</u>	-6
외무공무원 계	<u>1,495</u>	<u>1,489</u>	-6
·	·	·	
·	·	·	
8등급 이하	<u>1,094</u>	<u>1,088</u>	-6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3